

삼척시군립공원위원회 설치조례(안)

의안 번호	223
----------	-----

제출년월일 : 1995. . .

제출자 : 삼척시장

1. 제안이유

- 자연풍경지를 보호하고 적정한 이용을 도모하여 주민의 보건, 휴양 및 정서생활의 향상에 기여하기 위해
- 자연공원법 제6조 및 동법 제20조의 규정에 따라 군립공원 위원회를 조례로 제정하여 운영하고자 함.

2. 주요골자

- 위원회의 구성에 관한 사항 (안 제2조)
 - 위원장 1인, 부위원장 1인을 포함한 10인 이내의 위원과 특별위원으로 구성
- 위원회의 기능 (안 제5조)
 - 군립공원의 지정, 폐지 및 구역변경에 관한 사항 심의
 - 군립공원계획의 결정, 변경에 관한 사항 심의
 - 기타 군립공원의 관리에 관한 중요사항 심의

3. 기대효과

- 향후 군립공원 업무의 효율적 추진을 도모
- 향후 대이리군립공원 이외의 공원 지정 필요지역 발생시 제반 사항을 위원회의 심의를 통하여 적정하게 결정
- 공원업무 추진과 관련한 제반 법령 및 규정의 준수

삼척시군립공원위원회 설치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자연공원법 제20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삼척시 군립공원위원회 (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조직·운영 기타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한 10인 이내의 위원과 특별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며, 부위원장은 위원중에서 선출한다.

③ 위원회의 당연직 위원은 총무국장, 사회산업국장, 건설도시국장, 기획담당관, 문화 공보담당관, 관광개발과장이 되며 그 밖의 위원은 공원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중 시장이 위촉하는 자가 된다.

④ 다음 각호의 자는 특별위원이 된다.

1. 당해 공원구역을 관할하는 읍·면장

2. 당해 공원구역 면적의 1,000분의 1 이상의 토지를 기증한 자로서 시장이 위촉하는 자

⑤ 제4항의 특별위원은 당해 공원에 관한 안건을 심의할 경우에 한하여 위원이 된다.

제3조(임기) 제2조 제3항의 위촉위원 및 동조 제4항 제2호의 특별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제4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회무를 총괄하며 위원회의 의장이 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5조(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군립공원의 지정·폐지 및 구역변경에 관한 사항

2. 군립공원계획의 결정·변경에 관한 사항

3. 기타 군립공원의 관리에 관한 중요 사항

제6조(회의) ① 위원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이를 소집한다.

② 위원회는 쟁점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며 가부동수인 경우에는 의장이 결정한다.

제7조(간사)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군립공원 담당 계장이 된다.

제8조(의견청취) 위원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관계공무원, 관계기관 또는 전문가를 위원회에 출석케 하여 의견을 청취하거나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제9조(실비보상) 위원회 회의에 출석한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외 범위안에서 삼척시각종위원회실비변상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0조(운영세칙) 이 조례에 규정한 것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삼척시군립공원위원회 설치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발의년월일 : 1995년 11월 8일

발 의 자 : 이정훈의원외 3인

1. 수정이유

삼척시군립공원위원회 설치조례안 제2조 위원구성에 있어서, 제3항의 당연직위원과 위촉직위원으로 구성인원 구분되어 있는 것을, 구분자체를 없애고, 위원회 운영의 탄력성 제고와, 전제기능 강화를 위한 의견을 강화하기 위하여, 관계공무원과, 의원, 기타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민간인으로 구성인원을 적절히 안배하여, 위원회 운영의 효율성을 도모하기 위함.

2. 수정내용

당초 제출 조례안	수정안 내용
<p>제2조(구성)</p> <p>③ 위원회의 당연직위원은 총무국장, 사회산업국장, 건설도시국장, 기획담당관, 문화공보담당관, 관광개발과장이 되며, 그 밖의 위원은 공원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중 시장이 위촉하는 자가 된다.</p>	<p>제2조(구성)</p> <p>③ 위원회 위원은, 관계공무원 5인, 의원 1인, 그리고 공원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중 시장이 위촉하는 자가 된다.</p>